식품기능성 평가지원

세부사업명	기능성식품산업	육성			세목	민간	경상보조		
내역사업명	식품기능성 평기	가지원		예산 (백만원					
사업목적	○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	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시험(세포·동물시험/안전성평가)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21조,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8조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, 농업법인 등								
지원한도	○ 식품기능성평가지원 :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(국고보조는 60백만원)	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	50 지방비	-	융자 -		자부담	50		
연도별 재정투입 현황	구 분 합 계 국 고 자부담	2017년 3,736 2,636 1,100	2018년 3,331 2,106 1,225		2019년 4,931 2,606 2,325	(단위: 백만원) 2020년 3,536 1,796 1,740			
담당기관		담당과		담당자		연락처			
	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		식품산업진흥과 헬스케어연구단		^회 정 예정	044-201-2133 061-219-9245/9341			
신청시기	정기(1월31일까지)			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					
관련자료	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		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, 농업법인, 농업인 등
 - *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)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·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
 - 단,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, 농기평(IPET)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*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, 해당기능,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

3. 지원대상

○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시험(기능성평가(세포·동물시험)/안전성평가) 및 인체적용시험 연구비 지원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인체적용前시험
 - 인건비(내부인건비, 외부인건비), 직접비(재료비 및 전산처리비, 여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기술정보활동비, 연구활동비), 간접비(간접경비)
- 인체적용시험
 - 인건비(내부인건비, 외부인건비), 직접비(검사비,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, 여비, 피보험자보상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통계처리비, 시료제작비, 기술정보활동비, 연구활동비), 간접비(간접경비), 기타비(임상시험 수탁기관 비용, IRB심사비 등)
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50%, 자부담 50%
 - 기업 규모별 국고 차등지원

구분	중견기업	중소기업				
기준	평균 매출액 등 1,000억원 초과 (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)	평균 매출액 등 1,000억원 이하				
지원비율	40%	50%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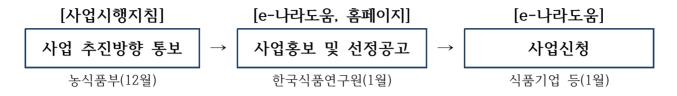
- * 근거법률: 「공정거래법」제14조제1항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8조제1항
- 사업범위: 인체적용前시험 7개 품목, 인체적용시험 1년차 7개, 2년차 15개
 - * 자부담의 현물/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
 - * 최종 선정 품목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식품기능성평가지원 : 품목당 지원규모 120백만원 내외(국고보조는 60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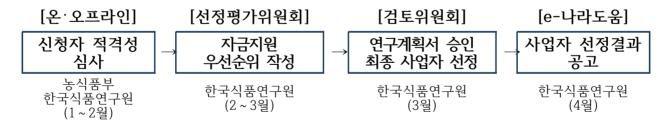
Ⅱ /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

-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.
 -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, 농식품사업의 교육·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-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.
 -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(사업계획서 등록)해야 한다.
 - *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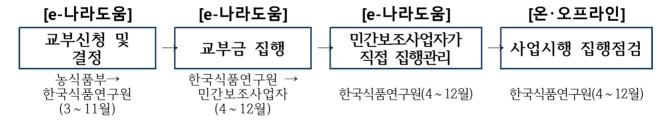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·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.
 -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신청자의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, 중복편중지원여부,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

-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평가
 -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
 - *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, 현장검증,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
 -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우선순위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·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
 - 1차 선정된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,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자로 확정
 -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*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(「기본규정」제42조제2항)
 - * 사업의 포기, 업종의 변경, 영농·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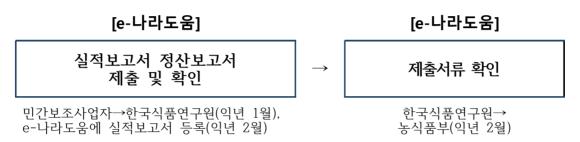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·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 -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,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
-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전표 등)를 등록 후 집행(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)
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
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 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'부정집행 모니터링'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(10일 이내)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 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
 - *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(계약, 조달지연 등)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
 - *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소진이 지난하므로 협약서(수행기관/기업)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월 가능
 - *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
 -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
 -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,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
 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
 - *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은 최종년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총 2년에 해당되는 정산관련서류를 시행기관에 제출
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*를 확인한 경우「보조금법」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,
 - 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 - 아울러「기본규정」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「기본규정」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
 -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
-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
Ⅲ / 평가 및 환류

1.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

○ 사업자는 2021. 2.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(증빙서류 첨부)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

2. 평가

-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
-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

[별지 제1호 서식] 인체적용시험 사업신청서

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신청서

※접수번호	
-------	--

1.기관명				업자등록 등록번호)			
3.주소							
4.대표자			5.전:	화번호			
	성명		직	위			
6.주담당자	전화		គំ	휴대전화			
	FAX		전	자우편			
7.지자체			8.생	산자단체			
	(국문,	물질 또는 제품명 영문, 화학명) 성평가 지원항목					
	(표 참조)						
9.기능성평가 품목정보		령가 근거자료	□ 소재/품목에 대한 자료 □ 시험물질 성적서 등 in vitro 실험 □ in vivo 동물시험 □ 안전성자료 □ 관련 논문 및 특허 □ 지리적표시제 등록 또는 지자체 추천서 □ 생산자단체 참여확인서				
			□ 기타 (, <u>, </u>)
	4 기타						
	업태	□ 지자체 □] 농업법' 	인 🗆 벤	처기업 L 	□ 기업 □	연구소
10.기업현황	인원		명	매출현황		천원	
	신청기업	공동부담액		총 사업	비(2억원	이내)의	% 천원
이싱	라과 같이	식품 기능성평가		시험 지원 <i>.</i> 2020년	사업에 응 월 일	;모합니다.	
				관명 : 청인 :		(인 또는	서명)
농림흑	축산식품	부 귀하					
※ 첨부서류 1. 사업신 2. 추가 근 3. 파일 1.	청서 10부 ² 거자료 (성	성적서, <i>in vitro, in</i>	<i>vivo</i> 동물,	시험, 안전 [,]	성에 대한	자료 등) 2부	<u>1</u>

[별지 제2호 서식] 인체적용前시험 사업신청서

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 신청서

※접수번호	
-------	--

1. 기관명					자등록 - 목번호					
3. 주소										
4. 대표자				5. 전호	바번호					
	성명			직 위						
6. 주담당자	전화			휴대	대전화					
	FAX			전자우편						
7. 지자체				8. 생신	산자단체					
9. 품목정보	_	물질 또는 제품명 영문, 화학명)								
	② 평가 지원항목			□ 기능성평가 (당뇨, 비만 등) □ 안전성평가					1	
	③ 시험평가 근거자료 (해당되는 것에만 표시)			□ 소재/품목에 대한 자료 □ 역사적우수성 자료 □ 지리적 우수성자료 □ 시험물질 성적서 등 □ 기능성자료 □ 안전성자료 □ 관련 논문 및 특허 □ 지리적표시제 등록 또는 지자체 추천서 □ 기타 ()						
	④ 기타	특이사항								
10. 기업현황	업태	□ 지자체 [_ 농	업법인	□ 벤ᄎ	기업		기업 [□ 연구	소
10. 1166	인원			명	매출현황	탈			천	1원
이상과 같이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. 2020년 월 일 기관명 : 신청인 : (인 또는 서명)										
농림축산식품부 귀하										
※ 첨부서류 1. 사업신경	='	2. 추가 근거자.	료 2부	! 3.	파일 1부					